#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

2021. 1. 27

㈜**티플미디어** 

『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64조의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)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1년 1월 27일

##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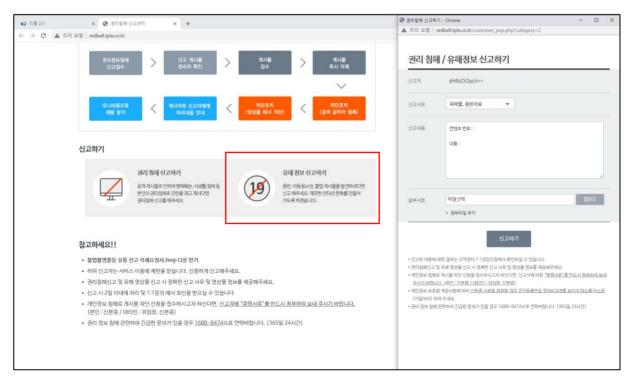
## 1. 일반현황 ('20년 12월말 기준)
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	㈜티플미디어
대 표 자	정태연 대표이사
정보통신 주요서비스 /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	온라인컨텐츠 <b>공유서비스 / 약 2.6만명</b>
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	약 40억원
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	정태연 대표이사

## 2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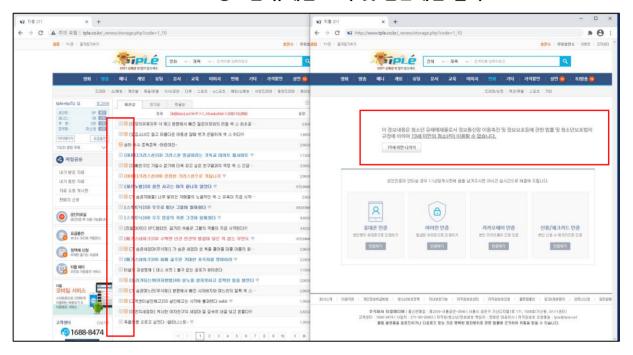
-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위한 시스템(특징기반구축) 운영: 2016 ~ 현재
- 운영팀 전담부서 및 고객센터(1688-8474) 운영: 2016 ~ 현재
- 불법촬영물 등 신고 안내 온라인 페이지 운영(http://redbell.tple.co.kr): 2016 ~ 현재

#### <게시물 신고하기 기능 제공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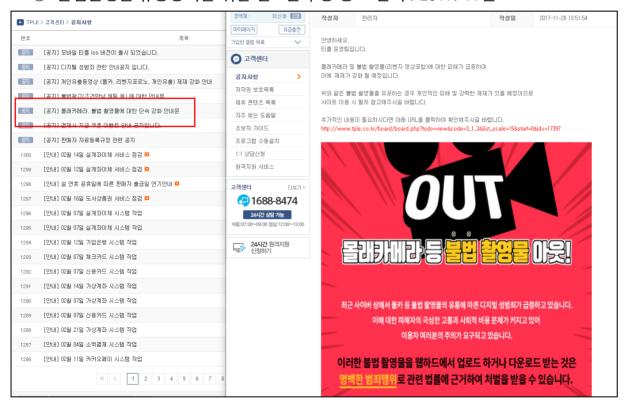


-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절차 마련(2020년도)
- 청소년 유해물 표시 및 접근제한 실시 : 2016 ~ 현재

#### <청소년 유해물 표시 및 접근제한 실시>



○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등 홍보 실시 : 2017. 11월



○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등을 위한 고객 상담센터 운영: 2016년 ~ 현재

# 3.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

○ 20.12.10. ~ 31. 신고접수 및 처리건수 없음

구분		1 월	2 월	3 월	4 월	5 월	6 월	7 월	8 월	9 월	10 월	11 월	12 월	계	
신고	신고·삭제 요청인	피해자 등	-	i	1	ı	-	1	-	ı	1	1	ı	0	0
		기관·단체	-	-	-	-	-	-	-	-	-	-	-	0	0
		소계	-	i	1	1	-	1	-	ı	1	1	ı	0	0
	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	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	
		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
	자체 삭제·접속차단														
	해당없음														
	방심위 심의요청	심의삭제·차단													
처리 결과		해당없음													
		각하 등													
	소계														
	삭제·차단 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	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	
		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

## 4.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

## ○ (관련 규정)

#### <피해접수 처리 흐름도>



㈜티플미디어(이하 '회사')는 불법촬영물등을 포함 불법음란물에 대한 유해 정보와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행위에 대해 제재 및 조치를 취하고 예방 차원의 조치를 상시 강구 하여야 합니다.

#### 1.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정책 수립

회사는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증절차 및 청소년유해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.

#### 2.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

회사는 정보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령 및 제재기준,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,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며,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의거, 서비스 약관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음란, 불법 등의 불건전 유해정보를 규제하도록 합니다.

#### 3.피해상담 및 고충처리

회사는 유해정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구제 조건의 지연 및 처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여야 합니다.

#### 4.신고 및 권장사이트 안내

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안내페이지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조치 하도록 합니다.

#### 5.담당부서 운영 시행

회사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,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.

### ○ (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대한 절차)

- 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시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촬영물등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삭제·접속차단을 한다. 단, 확인·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.
  - ② 해당 불법촬영물 등 게시자에게 경고문구 등 주의 안내를 보낸다.
  - ③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결과를 회신한다.

## ○ (기타 운영관련 사항)

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.

- ①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- ②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·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, 3년이상 보관한다.
- ③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한다.

# 5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

구 분	정	부
성 명	정태연	용인호
부 서	총괄	운영팀
직 책	대표이사	과장
지 정일	2020.12.21	2020.12.21

# 6.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

구 분	교육일	교 육명	참 석 자	시 간	교육기관
교육실시	2020-12-21	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	9명	2시간	자체교육